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4. 21.(월)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4. 7. 운영위원회 제안 (의안번호 452호)

나. 회부일자: 2025. 4. 1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2025. 4. 21.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생략)

가. 제안이유

- 정책지원관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정지원을 강화하고자 정책지원관을 사무국 또는 위원회 내 배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책지원관을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의회사무국

라). 입법예고

1. 예고기간 : 2025. 4. 7. ~ 2025. 4. 14.

2. 예고결과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현숙)

□ 개요 및 취지

-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1)에 구의회 사무직원의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등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정책지원관을 위원회 소속으로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시의회 및 타 의회 정책지원관 배치 조례 명시 현황 >

2025.4월 기준

구 분	의 회 명	비 고
사무국 (16개 의회)	종로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위원회 (2개 의회)	성동구, 은평구	
사무국 또는 위원회 (8개 의회)	서울시, 중구,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노원구, 서대문구, 강남구	위원회 배치 (서울시, 동대문구, 노원구)

□ 주요 내용

가. 안 제4조의2제1항(정책지원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u>사무국</u> 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 ③ (생략)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u>사무국 또는 위원회</u> -----. ② · ③ (현행과 같음)

1)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서울시 자치구의회의 정책지원관 배치는 위원회 내 전문위원실 또는 사무국 내 팀에 배치하여 운영 중이며, 배치형태와 상관없이 정책지원 활동에 대해서는 의원의 지시를 따르고 있음.
-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 소속으로 배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지원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임위원회에 직접 소속 되어 위원회 중심의 의정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5. 4. 21.(월)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4. 7. 의장 제의 (의안번호 453호)

나. 회부일자: 2025. 4. 1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2025. 4. 21.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의장제으로 생략)

가. 제안이유

- 성북구의회 사무국 기능에 따른 팀별 업무조정을 통해 조직 효율성, 현안 실행력을 제고하고, 전문위원의 보직기준을 확대하여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높여 정책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의정팀·정책지원팀 업무 내용 신설·조정(안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4호)
 - 정책지원관 관리, 의원 교육 및 후생복지, 의원 행동강령 등에 관한 사항을 정책지원팀 업무로 조정

나)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 따르도록 규정(안 제4조제1항)

다) 의원 의정활동지원 관련 정책지원관 업무내용 현행화(안 제5조제2항제7호)

○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의회사무국

라)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5. 4. 7. ~ 2025. 4. 14.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현숙)

☐ 개요 및 취지

- 본 개정안은 성북구의회 사무국 팀별 업무조정을 통해 현안 실행력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전문위원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높여 정책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

가. 안 제3조(사무분장)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사무분장) ① (생략) ② 팀별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의정팀 가. ~ 다. (생략) 라. 의회의 <u>의전 및 복리후생</u> 에 관한 사항 마. · 바. (생략) 사. 사정업무 <신설> 아. · 자. (생략) 차. 문서관리 · 보안 및 <u>관인관수</u> 카. <u>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총괄</u> 타. (생략) 파. <u>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신고</u> 하. · 거. (생략) 너. 그 밖에 다른 <u>계의</u>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 3. (생략) 4. 정책지원팀 가. <u>조례 제정 · 폐지, 예산 · 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 · 조사 · 분석 지원</u> 나. <u>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 · 분석 지원</u> 다. <u>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u> 라. <u>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u>	제3조(사무분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u>의전</u> ----- 마. · 바. (현행과 같음) <삭제> 자. <u>일반직공무원의 재산등록, 병역 신고에 관한 사항</u> 사. · 아. (현행 아목 및 자목과 같음) 차. ----- <u>관인 관리에 관한 사항</u> <삭제> 카. (현행 타목과 같음) <삭제> 타. · 파. (현행 하목 및 거목과 같음) 하. ----- <u>팀의</u> --- 2. · 3. (현행과 같음) 4. 정책지원팀 가. <u>정책지원관 평가, 배치 등에 관한 사항</u> 나. <u>의원 교육에 관한 사항</u> 다. <u>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심의에 관한 사항</u> 라. <u>의회 표창업무에 관한 사항</u> 마. <u>의원 신상, 재산등록,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u>

<u>련 자료 취합 · 분석 지원</u> <u>마. 의원의 공청회 · 세미나 · 토론회</u> <u>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u> <u>바. 의원 교육연수</u> <u>사. 의원연구단체 운영</u> <u>아.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u> <u>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u> <u>· 분석 · 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u>	<u>바. 의원 행동강령 등 청렴에 관한</u> <u>사항</u>
--	---

- 중복된 업무는 삭제 및 수정하여 조정한 사항이며, 현재 정책지원팀 분장사무 중
가목에서 마목 및 아목은 해당 규칙 제5조제2항에 정책지원관의 직무를 기술
한 것으로, 향후 정책지원관이 위원회로 배치될 예정으로 삭제한 사항이며,
의정팀의 일부 사무를 정책지원팀 사무로 이관 조정한 사항임.

나. 안 제4조(전문위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 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u>전문위원은 지</u> <u>방행정사무관, 지방별정직 5급 상당,</u> <u>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별정직 6급</u> <u>상당으로 보한다.</u>		제4조(전문위원) ① ----- ---- <u>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는 「서</u> <u>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u> <u>칙」에 따른다.</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의회사무
기구의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 규정에 맞추어 개정하는 사항임.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현행 규칙에 있는 부정확한 표현을 정비 및 현행화하고, 사무국 팀별 업무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관련 법령의 근거 규정 및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